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17

발의연월일: 2024. 9. 13

발 의 자: 김도읍 · 신동욱 · 주진우

조지연 • 윤한홍 • 조승환

구자근 • 이성권 • 김소희

장동혁 • 권영세 • 김정재

이헌승 · 김형동 의원

(149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,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「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임

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찰공무원 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이 필 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.

따라서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「경찰공무원법」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(제7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2조의2(공상공무원의 휴직기간) 공무원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·업무 또는 활동 등을 수행하다가 제7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,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공상공무원의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

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 <신 설></u> | 제72조의2(공상공무원의 휴직기 |
| | 간) 공무원이 「공무원 재해보 |
| | <u>상법」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</u> |
| | 무・업무 또는 활동 등을 수행 |
| | 하다가 제72조제1호 각 목의 |
| 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|
| |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 |
| | 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|
| | 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 |
| | 년 이내로 하되, 의학적 소견 |
| |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|
| |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 |
| | 에서 연장할 수 있다. |